

친족 채용사실 신고서

1. 신고자 인적사항	성명	
	소속	
	직급	
2. 채용된 친족의 인적사항	성명	
	채용 일자	
	채용 직급	
	채용시험명	
	신고자와의 관계	☐ 배우자 ☐ 4촌 이내의 혈족 ☐ 4촌 이내의 인척
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15조의4제1항 및 「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친족 채용사실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 고 자 (서명 또는 날인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		

주 1) ‘소속’의 경우 신고자가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(중앙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의 경우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)을 기재한다.

2) ‘채용시험명’은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.

(예시) 선거관리위원회 0000년 제0회 경력경쟁채용시험